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봉투사용으로 인해야기되었던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전용수거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하게 되어 이에 따른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개정코자 함.

2.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 주요골자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 사업장 변경(안 제2조제2호)
- 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
-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안 제5조)
- 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종류 지정(안 제9조제1항)
- 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를 규격봉투 판매로 하던 것을 전표 및 납부필증 판매로 변경 및 삭제(안 제11조 제1항, 제3항 변경, 제11조제2항 삭제)
- 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 신설(안 제16조)

4. 검토의견

본조례 개정건은

- 2005. 1. 1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거체계를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전환 함으로써 그동안 전용봉투에 이물질 과다 혼합반입으로 인한 기계의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비용상승·악취와 도시미관저해,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악순환과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전용용기 종류지정,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삭제 등 배출관련 운영개선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등 수수료 과징절차와 체계, 준용규정신설 등은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특히 환경부 제2차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본계획과 부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세부계획 등에 관련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